

의안번호	2205769
의 퇴 인	조배숙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 계 번호	24D5121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등록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될 경우,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5억원(연평균 7억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안심주소의 발급 (안 제7조의6 신설)	3,500	-	-	-	-	3,500

주: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비용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6 (안심주소의 발급) 신설	·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주소(이하 “안심주소”라 한다)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(제1항) 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(제1호) 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(제2호) -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(제3호) -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자(제4호) ·그 밖에 안심주소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
1	안 제7조의6 (안심주소의 발급) 신설	○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안심주소 도입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비용을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
-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비용 이외의 안심주소 표기방법 개발 비용,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「주민등록법」의 주소를 사용하는 약 120개 기관¹⁾의 시스템 개선 비용²⁾ 및 안심주소 도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측이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: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

- 개정안은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1인 1개의 실거주지 주소와 구분·매칭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재

1) 120개 기관의 약 240개 시스템: 약 400개의 공공·민간(금융·통신 등)서비스 제공에 활용됨

2)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종 공공서비스는 주민등록정보(주민번호·주소 등)를 기반으로 구축·제공되고 있으며,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시스템 및 주소를 사용하는 연계기관의 모든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설계하여야 하며, 안심주소 DB 구축 비용 등으로 총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- 안심주소는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되며, 실거주지 주소와 분리하여 별도의 안심주소 DB 또는 시스템 관리를 전제로 개발 필요
- 개정안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비용은 추계 첫해인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안심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비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항목	세부 내역	비용
합 계				3,500
주민등록시스템	통합행정	① 주민등록 (통합행정)	•통행행정DB 수정 및 화면(입력, 조회, 출력) 등 •안심주소 별도 관리를 위한 DB 구축	1,500
		② 인감/본인서명	•안심주소 처리 기능* 구현(입력, 조회, 출력 등)	200
		③ 선거	•3개 전국선거 선거인명부 생성 시 안심주소 처리 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 등)	500
		④ 무인민원발급기	•주민등록 등·초본 및 주소가 수록된 다른 증명서(타 부처)	200
		⑤ 주민요약DB	•전국의 지방자치 주민요약DB에 안심주소 반영을 위한 DB 변경	300
	•주민요약DB를 사용하는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시스템에 적용, 안심주소 처리 기능* 구현		지자체 부담	
	정보제공	⑥ 주민등록 (정보제공)	•통합행정의 안심주소를 송수신 가능하도록 DB 수정 •연계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형식 변경	400
		⑦ 인구/선거 통계	•안심주소 집계 반영, 안심주소 관련 통계	400
연계기관	⑧ 주민등록 정보연계	•안심주소 DB 구조 변경 및 안심주소 처리 기능* 구현 (연계기관)	연계기관 부담	
	⑨ 정부24	•주소를 사용하는 민원처리에 안심주소 반영		

주. 안심주소 처리 기능: 조회 시 처리자 인증 및 처리자 조회 이력을 저장하는 기능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등록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될 경우, 향후 5년간 총 35억원(연평균 7억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3]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안심주소의 발급 (안 제7조의6 신설)	3,500	-	-	-	-	3,500

주: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비용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에서는 안심주소 표기방법 개발 비용,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「주민등록법」의 주소를 사용하는 약 120개 기관의 시스템 개선 비용 및 안심주소 도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비용을 추계함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